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3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이병진・이재관・이연희

송옥주 · 임호선 · 주철현

복기왕 • 윤후덕 • 이원택

강유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 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을 할 수 있다.

-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
	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
	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자금의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u>있다.</u>